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전주시보

제1143호 2023. 2. 15.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훈 령

전주시 훈령 제1164호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
전주시 훈령 제1165호 전주시립도서관 자료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전주시 훈령 제1166호 전주시립도서관 직원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

고 시

전주시 고시 제2023-29호 삼천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) 지정 고시
전주시 고시 제2023-30호 도로명주소 고시
전주시 고시 제2023-31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공 고

전주시 공고 제2023-362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전주시 공고 제2023-396호 전주시 방재성능목표 공표

구 청

완산구 공고 제2023-94호 도로지정 공고
완산구 공고 제2023-97호 도로폐지 공고
덕진구 공고 제2023-76호 도로지정 공고
덕진구 공고 제2023-105호 도로지정 공고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전라북도 고시 제2002-208(2002. 7. 6.)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15일

전 주 시 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: 변경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7	전주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8일원	2,535,846.6	감 100	2,535,746.6	2002.7.6 전라북도 고시 제2002-208호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7	전주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	■ 구역면적 - 2,535,846.6㎡→2,535,746.6㎡(감 100㎡)	■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 제척

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

1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**변경**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**변경**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	2,535,846.6	-	2,535,746.6	100.0	
주거 지역	소 계	1,622,941.7	-	1,622,941.7	64.0	
	전용주거지역	131,846.0	-	131,846.0	5.2	
	제1종전용주거지역	131,846.0	-	131,846.0	5.2	
	일반주거지역	1,219,742.5	-	1,219,742.5	48.1	
	제2종일반주거지역	1,085,342.7	-	1,085,342.7	42.8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34,399.8	-	134,399.8	5.3	
	준주거지역	271,335.5	-	271,335.5	10.7	
중심상업지역		524,920.1	-	524,920.1	20.7	
자연녹지지역		387,984.5	감 100	387,884.5	15.3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	
169	완산구 효자동3가 1552	자연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387,884.5	-	■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 제척

나.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: **변경**

가. 도로 : 변경없음

나. 주차장 : 변경없음

다. 광장 : 변경없음

라. 녹지 : **변경**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 정 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-	녹지	-	-	73,266.2	-	73,166.2	-	
계	-	녹지	완충녹지	-	57,088.8	-	57,088.8	-	
기정	68	녹지	완충녹지	대2-6호선변	8,560.2	-	8,560.2	2002.7.6 전라북도고시 제2002-208호	
기정	69	녹지	완충녹지	대1-12호선변	12,035.3	-	12,035.3	〃	
기정	70	녹지	완충녹지	대1-22호선변	15,116.6	-	15,116.6	〃	
기정	71	녹지	완충녹지	대1-23호선변	10,654.6	-	10,654.6	〃	
기정	72	녹지	완충녹지	대2-5호선변	8,907.0	-	8,907.0	〃	
기정	73	녹지	완충녹지	대3-27, 중1-68호선변	1,815.1	-	1,815.1	〃	
계	-	녹지	경관녹지	-	16,177.4	-	16,077.4	-	
기정	74	녹지	경관녹지	북측지구계 임야변	1,141.7	-	1,141.7	2002.7.6 전라북도고시 제2002-208호	
기정	75	녹지	경관녹지	중1-72호선 (삼천)변	7,629.2	-	7,629.2	〃	
기정	76	녹지	경관녹지	사회복지시설변	2,692.5	-	2,692.5	〃	
기정	77	녹지	경관녹지	호남제일여고변	281.9	-	281.9	〃	
기정	79	녹지	경관녹지	소2-474호선변	2,191.2	-	2,191.2	〃	
기정	84	녹지	경관녹지	중1-81호선변	2,240.9	감 100	2,140.9	〃	

마. 공원 : 변경없음

바. 공공청사 : 변경없음

사. 학교 : 변경없음

아. 사회복지시설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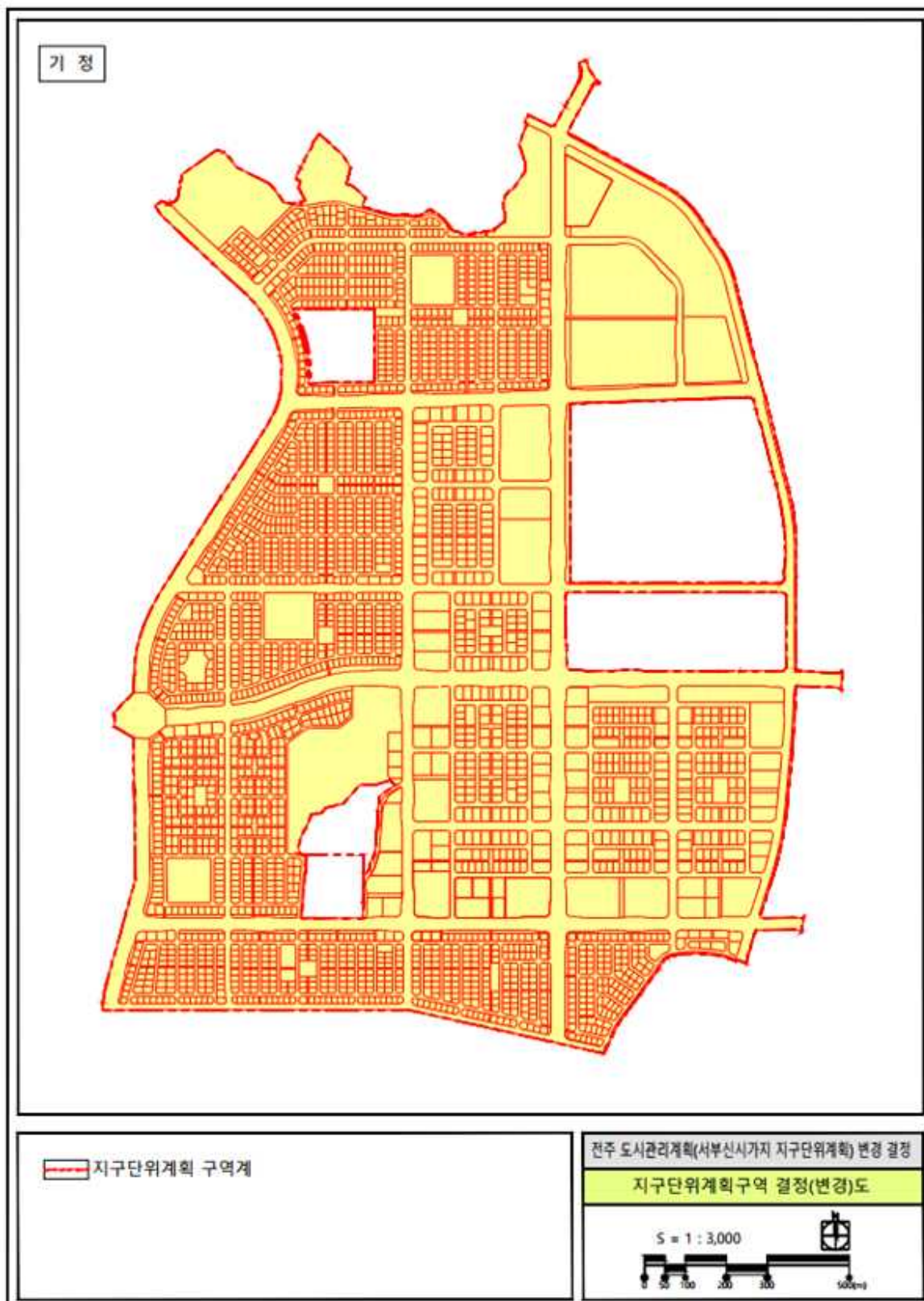
자. 유수지 : 변경없음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: 변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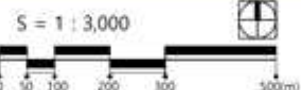
변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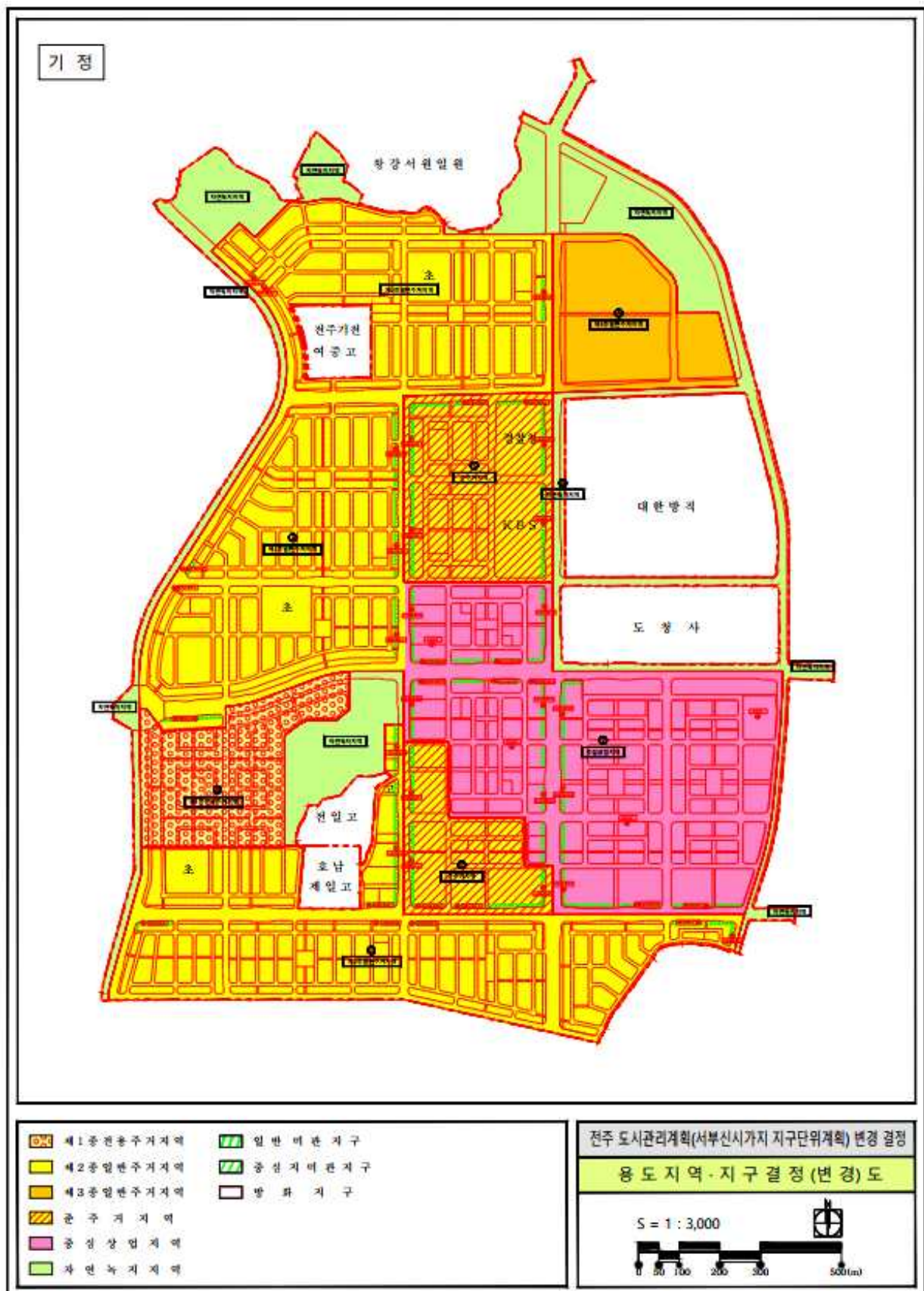
지구단위계획 구역계

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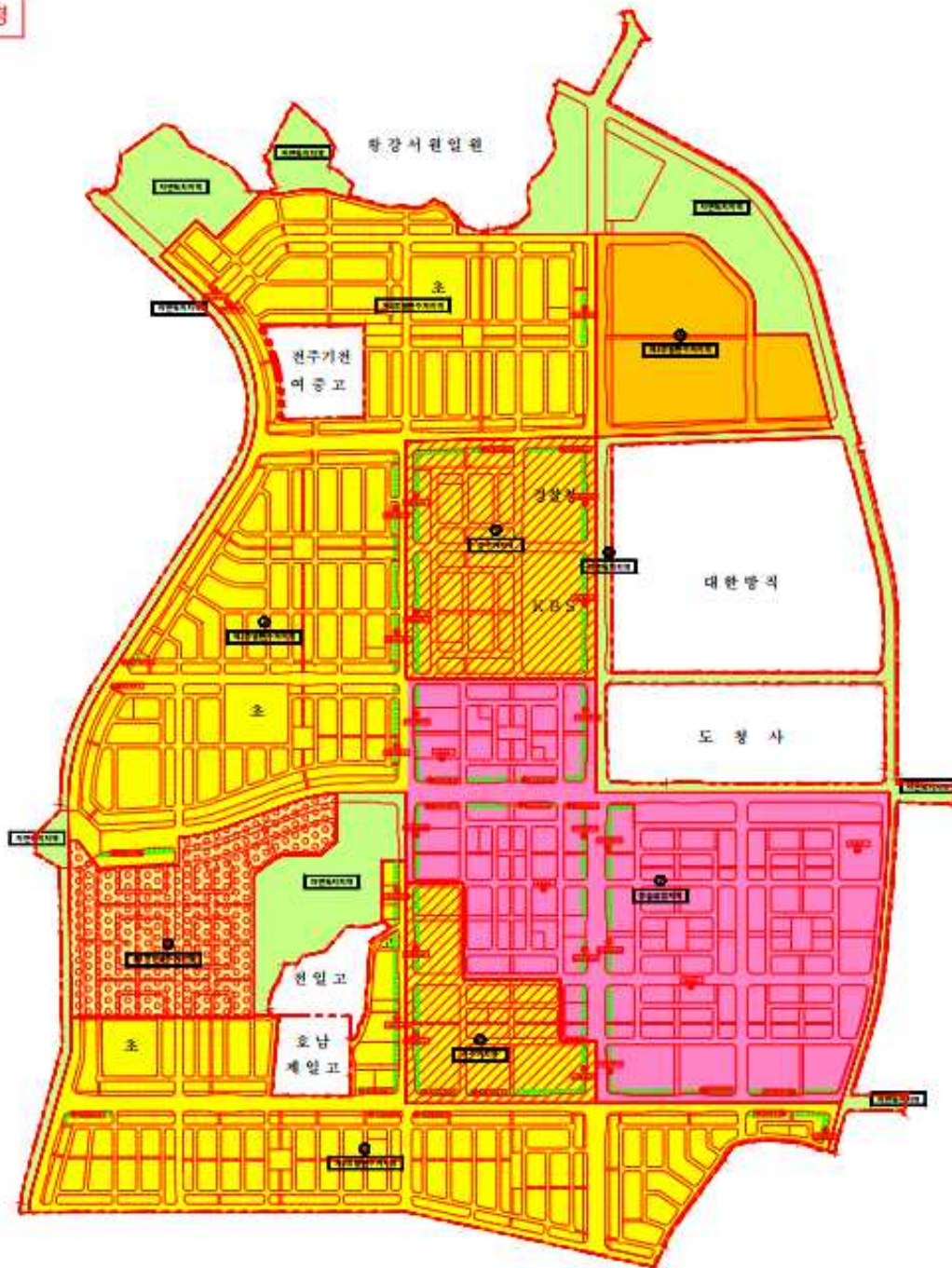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

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: 변경



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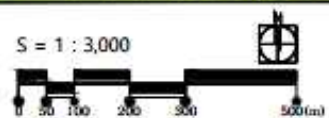
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세1종전용주거지역 | 일반미관지구 |
| 세2종일반주거지역 | 중심지미관지구 |
| 세3종일반주거지역 | 방화지구 |
| 준주거지역 | |
| 중심상업지역 | |
| 자연녹지지역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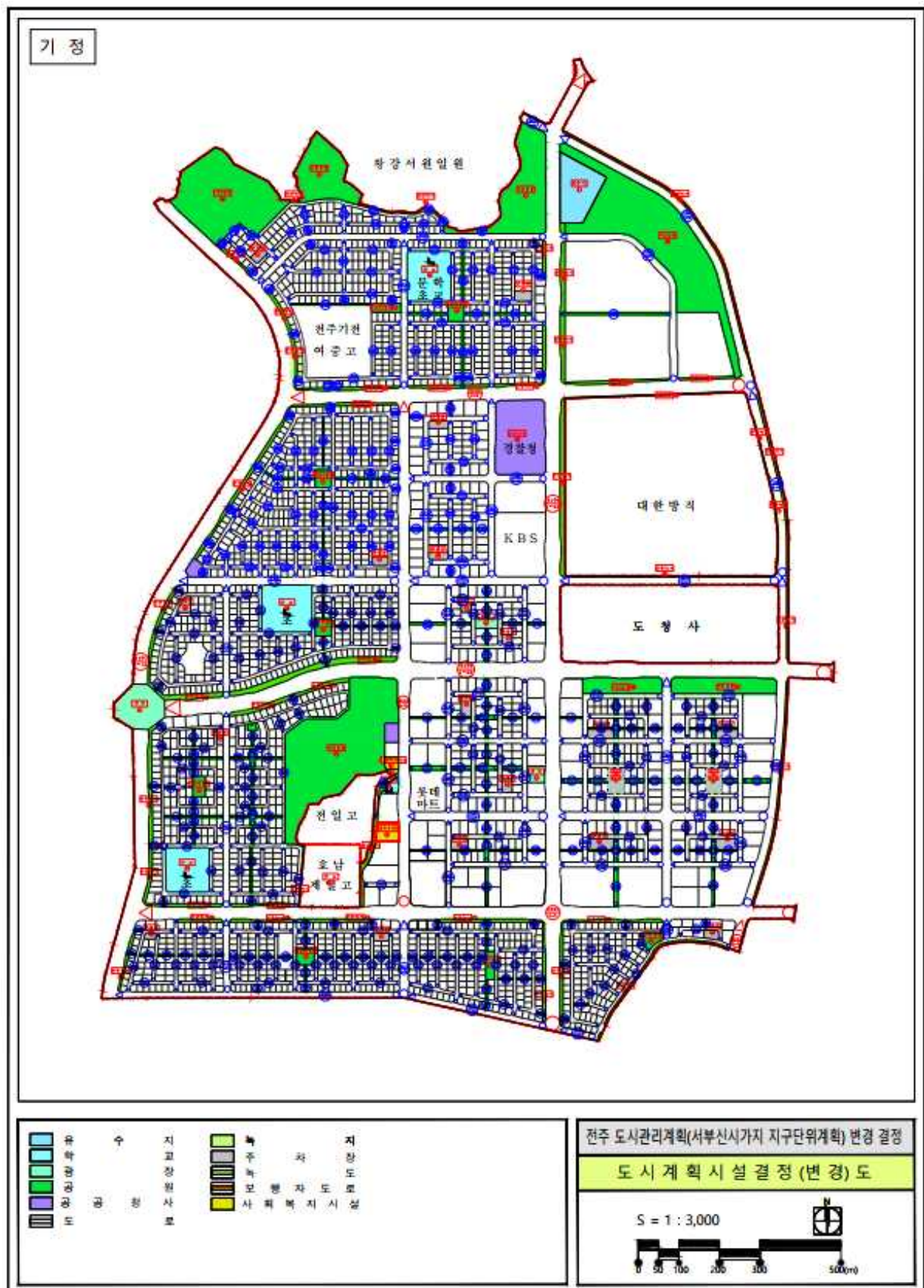
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

용도지역·지구결정(변경)도

S = 1 : 3,000


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: 변경



변경



- | | | | |
|---|--|---|--|
|  유수지 |  녹지 |  주거지 |  지상도로 |
|  유수지 |  녹지 |  주거지 |  지상도로 |
|  유수지 |  녹지 |  주거지 |  지상도로 |
|  유수지 |  녹지 |  주거지 |  지상도로 |
|  유수지 |  녹지 |  주거지 |  지상도로 |

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

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도

S = 1 : 3,000



4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: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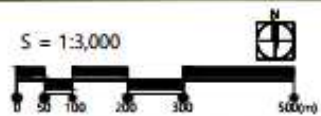


변경



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

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도

$$S = 1:3,000$$


- 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: 변경없음
- ☐ 전주 도시관리계획(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지형도면 : 실음생략
 -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- 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63-281-25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